

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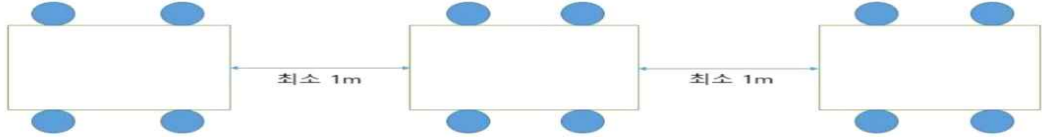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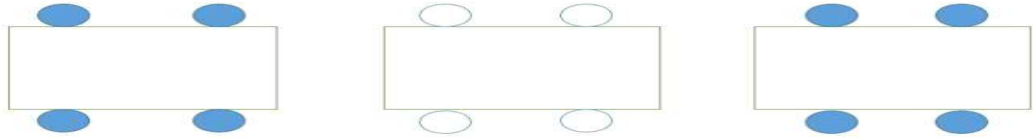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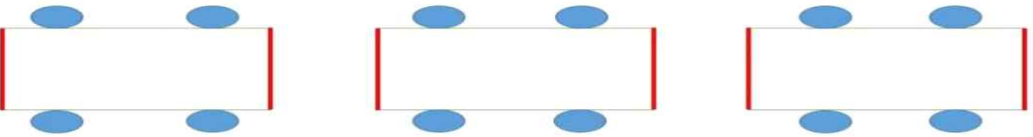
핵심방역수칙(2단계)

1 유흥시설 등 (유흥·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홀덤펍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유흥시설 등 (유흥·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홀덤펍)</p>	<p>① 운영제한시간* 준수 * 22시~익일 05시</p> <p>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수기명부 작성 불가, 유흥종사자도 작성</p> <p>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</p> <p>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p> <p>⑤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</p> <p>⑥ 방역관리자 지정</p> <p>⑦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</p> <p>⑧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,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</p> <p>⑨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</p> <p>⑩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p> <p>⑪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</p> <p>⑫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** 이용인원 산정 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</p> <p>⑬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</p> <p>⑭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</p> <p>⑮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·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·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·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 </div> <p>⑯ 실내 흡연 금지 안내</p>	<p>① 운영제한시간* 준수하여 이용 * 22시~익일 05시</p> <p>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- 전자출입명부 이용(의무) * 수기명부 작성 불가, 유흥종사자도 작성</p> <p>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p> <p>④ 마스크 착용</p> <p>⑤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</p> <p>⑥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p> <p>⑦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</p> <p>⑧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</p> <p>⑨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사항 모두 준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·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 </div> <p>⑩ 실내 흡연 금지</p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< 좌석 도식도(예) >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		
좌석 한 칸 띄워 앉기		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	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색살선-가림막)			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